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일) 11:00 < 7.3.(월) 조간 > 배포 2023. 6. 30.(금)

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 송주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23. 7. 4 시행)으로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 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 (주택매수 청구지역) 345kV 이상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주거용 주택
 -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백만 원, 최대 2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선택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비용 산정)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3930)
		담당자	사무관	유용상 (044-203-39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송전설비주변법 개요 및 현황**

1. 송변설비주변법 개요

□ 입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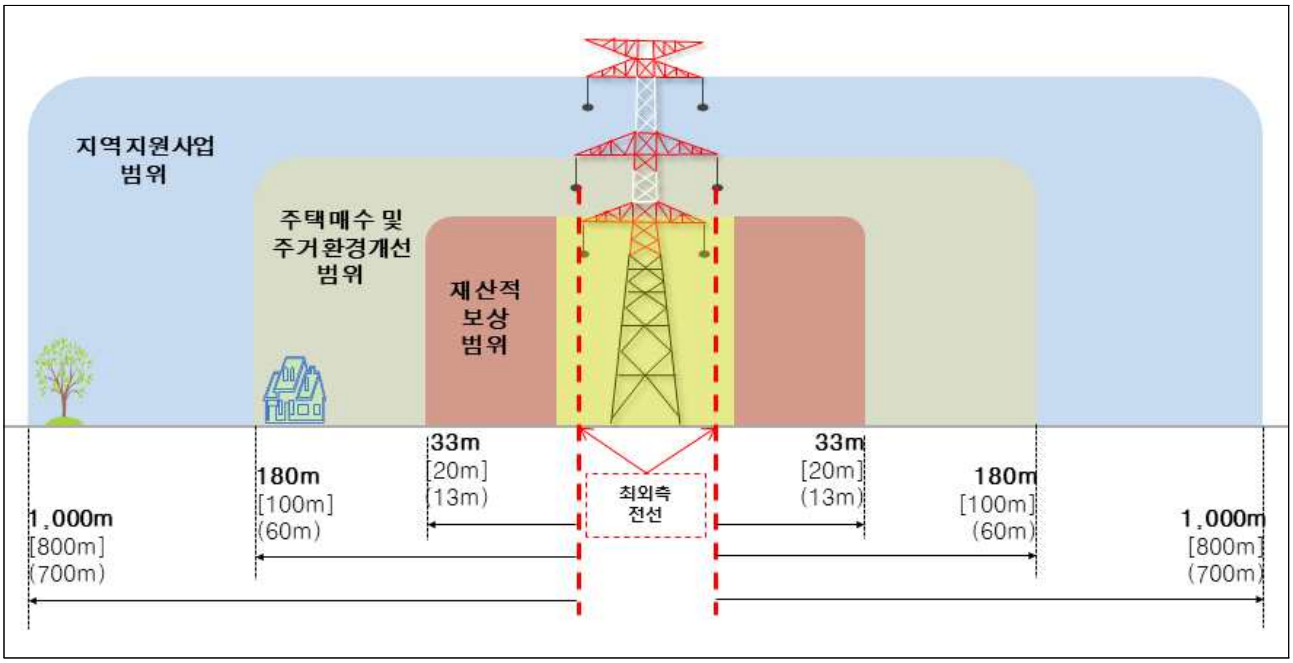
○ 밀양 등 송전탑 건설관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필요성 대두

→ '14. 1. 2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제정

□ 현행 송주법 보상제도

구 분	재산적보상	주택매수	지원사업
보상대상	편입 토지	편입 주택	주변 마을
보상기간	공사 승인일 ~ 공사완료일 이후 2년 (1회성)		송변전설비 사용일 ~ 철거완료일 (매년)
보상방법	토지보상	**소유권 이전**	주민 복지사업 등

□ 보상별 청구의 범위



구 분	765kV	500kV	345kV
	최외측 전선에서		
재산적보상	33m 이내	20m 이내	13m 이내
주 택 매 수	180m 이내	100m 이내	60m 이내
지역지원사업	1,000m 이내	800m 이내	700m 이내

2. 주택매수 현황 및 문제점

□ 주택 소유자의 **주택매수 청구실적 저조**

○ 주택매수 실적 분석

전 압 별 (사업건수)	**주택 매수**(종합)			**호별 평균비용**(백만원)		
	대 상 (호)	실 적 (호)	금 액 (백만원)	주 택 매수비용	주 거 이전비	이사비
765kV(2)	47	20(43%)	5,566	278	2.8	1.2
345kV(23)	663	73(11%)	16,938	232	4.7	1.1
합 계	710	93(**13%**)	**22,504**	242	4.3	1.1

- **주택매수 청구율은 13%**로 나머지 **87%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 상황**

 * 생활환경이 열악한 765kV의 경우 345kV 대비 매수실적(43%)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이전에 따른 **금전적 제약**, **영농 유지** 등 사유로 **주택매수 미청구**

⇒ 주택매수 청구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없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 및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

□ 주택 가치하락 보전제도의 부재

○ 현행법은 **주택매수 외 가치 하락에 대한 보전 방안이 부재**함

- **토지**의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재산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매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음**

참고 2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 개요

□ 주거환경개선의 정의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정의)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지원범위)**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택

* 철탑의 전선 최외측부터 60m(345kV), 100m(500kV), 180m(765kV)

□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 **(지원금액)**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기준적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 **최하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액 : 1천2백만원 ≦ 주택 공시가격의 30% ≦ 2천4백만원

<토지보상법 이주정착금 인용>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②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 **주택매수와 비교**

구 분	주 택 매 수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보상대상	주거용 주택, 대지, 정착물 등	주거용 주택
보상범위	전선 최외측부터 60m(345kV), 100m(500kV), 180m(765kV)	
보상기간	공사 승인일 ~ 공사완료일 이후 2년	
산정기준	감정평가	주택 공시가격
보상방법	소유권 이전	1회성 보상